

| | |
|----------|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3618호 |
|----------|--------|

김포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2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6월 2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6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을 정비하고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 개정사항 반영
-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 폐지에 따른 명칭 정비(안 제2조제1호나목)
: 전임전문직 공무원 → 일반임기제 공무원
 -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규정 마련(안 제2조제1호다목)
 - 수의직렬 공무원 수당 상향 조정(안 제2조제2호): 월 50만 원 → 월 60만 원
- 나. 그 밖에 용어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[원안가결](#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